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31 선고 2019가합55206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4. 4. 11 선고 2023나202865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31 선고 2019가합552068 판결

전문

원 고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현

담당변호사 김사무엘

피 고 1. D

2.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코리아

담당변호사 김경울

변론종결 2023. 3. 15.

판결선고 2023. 5. 31.

주 문

1. 피고 D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74,855,103/1,214,556,000 지분에 관하여, 원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6,422,887/1,214,556,000 지분에 관하여, 2019. 8. 14.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E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03,056,237/1,214,556,000 지분에 관하여, 원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50,144,954/1,214,556,000 지분에 관하여, 2019. 8. 14.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원고 A, 원고 C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예비적 청구, 원고 B의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 A, C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70%는 위 원고들이, 30%는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B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 : 피고 D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5/18 지분에 관하여, 피고 E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 A에게 3/7, 원고 B, C에게 각 2/7 비율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21. 접수 제988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 : 피고들은 원고 A에게 각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2 지분에 관하여, 원고 B에게 각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8 지분에 관하여, 원고 C에게 각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8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자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 B, C와 피고 D은 G와 원고 A 사이의 자녀들이고, 피고 E은 피고 D의 배우자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1) G은 1987. 9. 2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2) G이 사망하기 몇 달 전인 2019. 1.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서(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서’라고 하고, 이에 의한 증여계약을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그 내용은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담보대출금채무와 임대차보증금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G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증여한다는 것으로, 여기에는 G과 피고들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3) 피고 D은 2019. 1. 17. G의 대리인 자격으로 G의 인감증명을 발급받았고, 피고 E은 2019. 1. 21. G의 인감증명서, G과 피고 D의 인장이 날인된 위임장을 첨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21. 접수 제9877호로 피고들 공유(각 1/2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다. G의 사망

G은 2016. 1.경 암 수술을 받은 바 있는데, 2019. 1. 8. F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2019. 1. 17. 위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며, 2019. 1. 31. 위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였고, 2019. 5. 1. 사망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G의 사망으로 원고들과 피고 D이 공동으로 상속하게 되는데,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중 그의 법정상속분인 2/9 지분에 관한 부분은 실체관계에 부합하므로, 피고 D은 이 사건 부동산 중 나머지 $5/18 (= 1/2 - 2/9)$ 지분에 관하여, 피고 E은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상속비율에 따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들이 2019. 1. 13. G의 건강이 악화된 것을 기화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위조하여 마친 것이므로 원인무효이다.

② 이 사건 증여계약은 피고들이 그들의 계약상대방인 G을 대리하여 체결한 것이어서 자기계약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24조에 의하여 무효이다.

③ 이 사건 증여계약은 G의 건강이 악화되어 정상적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들로 하여금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게 하는 것으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04조에 의하여 무효이다.

2) 이 사건 증여계약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하다고 한다면, 이로 인하여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 A에게 각 이 사건 부동산 중 $1/12 (= \text{원고 A의 상속분 } 3/9 \times \text{유류분 } 1/2 \times \text{피고별 } 1/2)$ 지분, 원고 B에게 각 이 사건 부동산 중 $1/18 (= \text{상속분 } 2/9 \times \text{유류분 } 1/2 \times \text{피고별 } 1/2)$ 지분, 원고 C에게 각 이 사건 부동산 중 $1/18 (= \text{상속분 } 2/9 \times \text{유류분 } 1/2 \times \text{피고별 } 1/2)$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의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증여계약은 G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체결된 유효한 계약으로 자기계약이나 불공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

2) 원고들이 청구하는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상속채무와 G의 생전증여로 인한 원고들의 특별수익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13,000,000원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채무 190,000,000원
- ② 피고들이 G를 대신하여 납부한 소득세 합계 30,341,630원
- ③ G이 원고 A에게 증여한 서울 관악구 H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H 상가’라고 한다)
- ④ 원고 A가 단독상속한 G의 예금채권 및 보험금채권 합계 74,284,544원
- ⑤ G이 1998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원고 B에게 증여한 유학자금
- ⑥ G이 2010. 5.경 및 2012. 5.경 원고 C에게 증여한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합계 140,000,000원

3.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증여계약서의 위조 주장에 관하여

1) 문서에 찍힌 인영이 그 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까지 추정되며(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2029 판결 등 참조), 문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작성명의자가 자신의 인장이 도용되었거나 위조되었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그 진정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3860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증여계약서에 날인된 G의 인영이 G의 인감도장에 의하여 현출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서의 진정성립은 추정되고,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7, 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G의 인감도장을 도용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들은 G이 2019. 1. 8.과 2019. 1. 17. 응급실에 내원하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서가 작성된 2019. 1. 13. 무렵에도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G은 2018. 12.경까지도 가족들과 외식을 하거나 지인들과의 모임에 참석하려 하는 등 외출이 가능한 상태였고, 의무기록에 의하더라도 2019. 1. 8.과 2019. 1. 17. 응급실 내원 당시 두통과 허리 통증

또는 어지러움을 호소하였을 뿐이고 의식은 명료하였다.

② 원고들은 이 사건 증여계약서에 G의 자필 기재 부분이 없고 피고 E이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을 문제삼고 있다. 그러나 고령에 지병이 있던 G이 자필로 이 사건 증여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G의 지시에 따라 피고 E이 대신 필요한 기재를 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피고 E은 2013년경부터 법무사사무소 사무원으로 근무하여 부동산등기에 관한 경험이 많았으므로, 원고들이 문제삼는 사정은 이 사건 증여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근거가 되기에 부족하다.

③ 원고들은 G이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는 재산을 증여하지 않으면서 피고들에게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B, C도 G으로부터 생전증여를 받은 점이나 원고 A가 별도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G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할 이유가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이 사건 증여계약서에는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담보대출금채무와 임대차보증금채무를 인수한다는 취지와 각 채무의 구체적인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계약서들을 소지하고 있는데, G이 피고들에게 위 채무들의 내역을 직접 알려주고 임대차계약서들까지 교부하지 않았다면 피고들이 위 채무들의 내역을 알고 임대차계약서들까지 소지하고 있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나. 자기계약 및 불공정한 법률행위 주장에 관하여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서에는 G의 기명날인이 되어 있고, 피고들이 G을 대리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피고 E이 G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증여계약서에 G의 인적사항 일부를 대신 적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대리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도 없이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G의 건강이 악화되어 정상적 판단이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G이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거나 이 사건 증여계약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계약이라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유류분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원고들은 G의 상속인으로서 G이 피고들에 대하여 한 증여로 말미암아 원고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그 부족한 한도 내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유류분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바, 유류분 부족액은 아래와 같이 산정된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A)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비율(B)]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재산 - 상속채무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적극재산 - 상속채무 부담액

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1) 관련법리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참조). 반면,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것에 대하여도 유류분반환청구가 허용된다(민법 제1114조).

어떠한 생전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판결 등 참조).

유류분반환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50783 판결 등 참조). 만일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보아야 하는데, 그러한 화폐가치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며(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 등 참조), 그 환산기준은 경제 전체의 물가수준 변동을 잘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한국은행의 GDP 디플레이터를 사용함이 타당하므로, 증여받은 금전의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는 ‘증여액 × 사망 당시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 ÷ 증여 당시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로 계산하여야 한다. 2010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그 수치를 100으로 정한 한국은행 GDP 디플레이터 수치는 아래 <표1> 기재와 같다(국가통계포털 인터넷 사이트 참조).

<표1> 연도별 GDP 디플레이터 수치

연도	GDP 디플레이터 수치	연도	GDP 디플레이터 수치
1998	78.0	2010	100.0
1999	77.0	2011	101.3
2000	77.8	2012	102.5
2002	82.9	2013	103.6
2003	85.8	2014	104.5
2004	88.5	2015	107.9
2005	89.4	2016	110.0
2006	89.2	2017	112.5
2007	91.4	2018	113.0
2008	93.9	2019	112.0
2009	97.3		

2) 기초재산 산정

가) 적극적 상속재산액

갑 제1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G의 사망 당시 G의 적극재산으로 예금 48,571,879원, 보험금 25,712,665원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나) 증여재산

(1) 이 사건 부동산 : 1,214,556,000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9. 1. 13.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는데, 이는 G이 공동상속인인 피고 D과 그의 처 피고 E를 특정하여 증여한 것으로 그 가액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G의 재산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피고 D에 대하여는 특별수익에 해당하고, 피고 E에 대하여는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증여로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된다.

상속개시 무렵인 2019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공시가격은 1,517,556,000원[= 토지 1,100,556,000원(㎡당 공시지가 6,840,000원, 면적 160.9㎡) + 건물 417,000,000원]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부담부로 증여받았으므로 피고들이 인수한 이 사건 부동산 관련 채무를 위 가격에서 공제하여 그 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을 제2,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부동산 관련 채무는 합계 303,000,000원(= I은행 근저당권부 대출금채무 113,000,000원 + 상가 임대차보증금채무 70,000,000원 + 주택 임대차보증금채무 120,000,000원)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은 1,214,556,000원(= 1,517,556,000원 - 303,000,000원)이며, 피고들에게 1/2 지분씩 증여되었으므로 피고들에게 증여된 가액은 각 607,278,000원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I은행의 근저당권부 대출금채무는 G이 대출받아 피고들의 아들인 J에게 지역주택조합 계약금 및 분담금을 지급해 준 것이므로 피고들의 특별수익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G이 위 대출금으로 J의 지역주택조합 계약금 및 분담금의 일부를 지급해 준 것은 피고들도 인정하는 바이지만, J은 G의 공동상속인이 아니고 갑 제10 내지 1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지급을 피고들에 대한 증여라고 평가하기 부족하므로, 이는 피고들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없다. 나아가 위 지급은 공동상속인 아닌 자에 대한 증여로서 상속개시 1년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이 사건 H 상가 : 산입하지 않음

갑 제27, 3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H 상가는 원고 A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원고 A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점, ② G이 오랜 기간 직장생활을 하며 원고 A와 자녀들을 부양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H 상가의 건축비용을 G이 부담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는 없는 점, ③ G과 원고 A의 혼인기간 동안 원고 A 역시 대부업을 영위하여 재산 관리 및 증식을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H 상가를 건축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H 상가를 G의 원고 A에 대한 증여재산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하지 않는다.

(3) G이 원고 B에게 증여한 유학자금 : 173,283,698원

을 제1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G이 1999. 6. 2.경부터 2018. 5. 2.경까지 원고 B에게 아래 <표2>와 같이 유학자금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 B은 위와 같은 증여를 받을 무렵 이미 30대의 성인으로 경제활동을 할 능력이 있었던 점, G의 상속재산에 비추어 원고 B에게 송금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일회적으로 지급한 용돈이 아니라 상당기간 정기적으로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유학자금은 원고 B의 특별수익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G이 원고 B에게 지급한 유학자금을 GDP 디플레이터를 적용하여 상속개시 당시인 2019년의 시가로 계산하면 아래 <표2>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란 기재와 같고, 그 합계는 173,283,698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다.

<표2> 원고 B에 대한 유학자금 증여

날짜	증여 당시 금액	상속개시 당시 시가
1998. 7. 23.	6,524,000	9,367,794
1999. 6. 2.	2,390,000	3,476,363
1999. 7. 2.	3,516,300	5,114,618
1999. 9. 3.	3,595,500	5,229,818
2000. 1. 27.	3,407,100	4,904,822
2000. 6. 19.	5,636,500	8,114,241
2002. 11. 7.	6,127,500	8,278,407
2002. 12. 27.	6,046,500	8,168,974
2003. 4. 21.	6,065,000	7,917,016
2003. 7. 29.	9,480,000	12,374,825
2003. 10. 27.	7,159,800	9,346,125
2004. 2. 2.	9,432,800	11,937,554
2004. 5. 14.	4,772,000	6,039,141
2005. 2. 28.	5,045,000	6,320,357
2005. 3. 3.	5,060,000	6,339,149
2005. 8. 1.	5,153,500	6,456,286
2005. 12. 5.	6,250,200	7,830,228
2006. 3. 14.	5,895,600	7,402,547
2006. 11. 10.	6,608,000	8,297,040
2007. 5. 2.	7,482,400	9,168,805
2008. 5. 20.	4,197,200	5,006,244
2009. 4. 24.	9,423,400	10,847,079
2018. 5. 2.	5,394,000	5,346,265
합계		173,283,698

피고들은 갑 제25호증으로 제출된 카드사용내역 역시 원고 B이 유학자금으로 사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카드사용내역에는 국내에서 사용되었거나 원고 B이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G의 원고 B에 대한 증여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G이 원고 C에게 증여한 임대차보증금 : 81,951,219원

을 제12 내지 1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G이 2010. 5. 27.경 서울 금천구 K빌라 L호에 관하여 M와의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6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2. 5. 25.경에는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M와의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7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 C와 그의 처 N이 위 임대차계약의 체결 무렵부터 2018. 7.경까지 위 빌라에 거주하였고 M가 2018. 7. 16. N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72,887,65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G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빌라에 원고 C와 그의 처 N이 거주한 점,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때에는 N이 차임 등이 공제된 임대차보증금의 잔액을 반환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이 2012. 5.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75,000,000원은 원고 C의 특별수익으로 봄이 타당하다.

G의 원고 C에 대한 위 증여금을 GDP 디플레이터를 적용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계산하면 81,951,219원(= 75,000,000원 × 2019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 112.0 / 2012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 102.5)이다.

(5) G이 피고 D을 위하여 변제한 대출금 : 12,384,168원

갑 제19, 20, 2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I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D이 2009. 6. 9.경 피고들 소유의 서울 관악구 O, P호를 담보로 제공하고 I은행으로부터 166,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 G이 2009. 11. 9.부터 2013. 1. 2.까지 아래 <표3>의 ‘증여 당시 금액’란 기재와 같이 피고 D 명의의 I은행 계좌에 돈을 입금하였고 위 돈이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이자로 출금된 사실이 인정되고, 그 액수와 기간, G이 자녀인 원고 D에게 거주지를 마련해 줄 의사로 대출금 이자를 정기적으로 지급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송금액은 피고 D의 특별수익으로 봄이 타당하다.

G의 피고 D에 대한 위 증여금을 GDP 디플레이터를 적용하여 상속개시일의 시가로 계산하면 아래 <표3>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란 기재와 같고, 그 합계는 12,384,168원이다(원고들은 G이 위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 전액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G이 위 대출금의 외에 원금까지 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계좌거래내역에는 원고 A의 명의로 입금된 부분이 있으나, G이 원고 A의 명의로 그 돈을 송금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으므로, 이는 G의 피고 D에 대한 증여로 인정하지 않는다).

날짜	증여 당시 금액	상속개시 당시 시가	계좌번호
2009. 11. 9.	1,100,000	1,266,187	I은행 (계좌번호 1 생략)
2009. 12. 9.	900,000	1,035,971	
2010. 2. 9.	1,000,000	1,120,000	
2011. 6. 29.	1,500,000	1,658,440	I은행 (계좌번호 2 생략)
2012. 4. 17.	1,200,000	1,311,219	
2012. 9. 4.	1,500,000	1,639,024	
2012. 10. 15.	1,000,000	1,092,682	
2012. 11. 30.	1,500,000	1,639,024	
2013. 1. 2.	1,500,000	1,621,621	
합계		12,384,168	

다) 상속채무 : 30,341,630원

앞서 본 바와 같이 G의 I은행에 대한 근저당권부 대출금채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채무 합계 303,000,000원이 있으나 이는 위 부동산의 시가 산정시에 공제하였으므로 추가로 공제하지 아니한다.

을 제4, 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E이 2019. 2. 28. 이 사건 증여계약(부담부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G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27,276,080원을 납부한 사실, 피고들이 2019. 6. 21. G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2,786,870원과 개인지방소득세 278,680원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각 소득세는 G에게 부과된 것이므로 상속채무에 포함된다.

라) 소결론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 합계(A)는 다음 <표4> 기재와 같이 1,526,117,999원이다.<표4>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

구분		가액	비고
특별 수익	원고 A	-	
	원고 B	173,283,698	유학자금
	원고 C	81,951,219	임대차보증금
	피고 D	619,662,168	이 사건 부동산의 1/2 + G이 변제한 대출이자
	피고 E	607,278,000	이 사건 부동산의 1/2
상속 재산	적극재산	74,284,544	G의 예금 및 보험금
	소극재산	-30,341,630	G의 소득세 채무
합계		1,526,117,999	

다.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1) 유류분 비율(B) 및 유류분액(A×B)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는 G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과 피고 D은 G의 직계비속이므로, 원고 A의 유류분 비율은 $1/6 (= 3/9 \times 1/2)$ 이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D의 유류분 비율은 $1/9 (= 2/9 \times 1/2)$ 이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유류분액을 산정하면, 원고 A의 유류분액은 254,352,999원(= 1,526,117,999원 $\times 1/6$), 원고 B, C과 피고 D의 유류분액은 169,568,666원(= 1,526,117,999원 $\times 1/9$)이다.

2) 특별수익액(C)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동상속인들 중 원고 B의 특별수익액은 173,283,698원, 원고 C의 특별수익액은 81,951,219원, 피고 D의 특별수익액은 619,662,168원이다.

3) 순상속분액(D)

가) 산정방법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 부족액’은 ‘유류분액’에서 유류분권리자가 받은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데, 유류분액에서 공제할 순상속분액은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인 상속분에서 유류분권리자가 부담하는 상속채무를 공제하여

산정한다(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등 참조).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구체적인 상속분의 산정을 위하여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증여의 가액을 가산한 후(간주상속재산),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의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 할 것이고, 여기서 이러한 계산의 기초가 되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 가운데 적극재산의 전액을 가리킨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 등 참조).

한편, 특별수익액이 법정상속분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초과특별수익자는 초과특별수익에 대하여 반환의무가 없으나, 실제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아무런 지분을 가지지 못하므로, 그 외의 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은 초과특별수익자가 없는 것으로 보고 나머지 상속인들이 초과특별수익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담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나) 구체적인 상속분액 및 순상속분액의 산정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A) 합계 1,526,117,999원에서 공동상속인이 아닌 피고 E의 수증액 607,278,000원을 제외한 금액 918,839,999원을 간주상속재산으로 하고 원고들과 피고 D의 법정상속분액에서 특별수익액을 공제하여 구체적 상속분액(갑 제1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가 상속재산분할협약에 의하여 G의 예금 및 보험금 74,284,544원을 상속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A에 대하여는 법정상속분액에서 위 예금 및 보험금을 공제한 금액을 구체적 상속분액으로 본다)을 계산하면 아래 <표5> 기재와 같다.

<표5> 구체적 상속분액(1차 계산)

상속인	간주상속재산 (①)	법정 상속비율 (②)	법정 상속분액 (③=①×②)	특별수익액 또는 상속금액 (④)	구체적 상속분액(D) (⑤=③-④)
원고 A	918,839,999	3/9	306,279,999	74,284,544	231,995,455
원고 B		2/9	204,186,666	173,283,698	30,902,968
원고 C		2/9	204,186,666	81,951,219	122,235,447
피고 D		2/9	204,186,666	619,662,168	-415,475,502

그런데, 피고 D의 특별수익액이 그의 법정상속분액을 초과하므로, 구체적 상속분액 중 피고 D의 초과특별수익 415,475,502원을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그 법정상속분 비율로 안분공제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다시 계산하되, 그 결과 구체적 상속분액이 음수(-)가 되는 공동상속인이 생기는 경우 음수인 구체적 상속분액을 다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그 법정상속분 비율로 안분공제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원고들과 피고 D의 구체적 상속분액을 계산하면 아래 <표6> 내지 <표8> 기재와 같이 결국 공동상속인들 전원의 최종 구체적 상속분액, 즉 순상속액(D)은 0(零)이 된다(공동상속인들의 최종 구체적 상속분액을 구하기 위하여서는 아래와 같이 계산한 상속분액에서 상속채무 부담액을 공제하여야 하나, 아래 표 계산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속채무 부담액 공제 전에 이미 모든 공동상속인들의 상속분액이 음수가 되므로, 상속채무 부담액을 공제하더라도 공동상속인들 전원의 최종 구체적 상속분액이 없게 되는 결과는 마찬가지이다).

<표6> 구체적 상속분액(2차 계산) - 안분공제 대상금액 415,475,502원 (①)

상속인	이전 구체적 상속분액 (②)	법정상속비율 (③)	안분공제액 (④=①×③)	구체적 상속분액(D) (②-④)
원고 A	231,995,455	3/7	178,060,929	53,934,526
원고 B	30,902,968	2/7	118,707,286	-87,804,318
원고 C	122,235,447	2/7	118,707,286	3,528,161
피고 D	-	-	-	-

상속인	이전 구체적 상속분액 (②)	법정상속비율 (③)	안분공제액 (④=①×③)	구체적 상속분액(D) (②-④)
원고 A	53,934,526	3/5	52,682,590	1,251,936
원고 B	-	-	-	-
원고 C	3,528,161	2/5	35,121,727	-31,593,566
피고 D	-	-	-	-

상속인	이전 구체적 상속분액 (②)	법정상속비율 (③)	안분공제액 (④=①×③)	구체적 상속분액(D) (②-④)
원고 A	1,251,936	1	31,593,566	-30,341,630
원고 B	-	-	-	-
원고 C	-	-	-	-
피고 D	-	-	-	-

4) 유류분 부족액

이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면 아래 <표9> 기재와 같다.

<표9> 유류분 부족액

상속인	유류분액 (A×B)	특별수익액 또는 상속금액 (C)	순상속액 (D)	유류분부족액 [(A×B)-C-D]
원고 A	254,352,999	74,284,544	-	180,068,455
원고 B	169,568,666	173,283,698	-	-3,715,032
원고 C	169,568,666	81,951,219	-	87,617,447
피고 D	169,568,666	619,662,168	-	-450,093,502

따라서 원고 A, C은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하므로 피고들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원고 B은 피고들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마. 유류분 반환의 방법 및 범위

1) 반환방법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여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통상적인 반환방법이라고 할 것이므로, 유류분 권리자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여 유류분반환을 청구하고 그와 같은 원물반환이 가능하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원은

유류분권리자가 청구하는 방법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다719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원고 A, C은 원물반환을 구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하기로 한다.

2) 반환범위

가)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를 함에 있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민법이 정한 유류분 제도의 목적과 민법 제1115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다른 공동상속인들 중 각자 증여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만을 상대로 하여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참조). 한편, 증여 또는 유증의 목적물이 수개이고 그 중 일부만으로 유류분의 부족분을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유류분권리자는 각 목적물의 가액에 비례하여 반환청구를 하여야 하고 반환의 목적물을 임의로 선택할 수는 없다.

나) 위 법리에 따라 보건대, 원고 B과 피고들은 원고 A, C에게 아래 <표10> 기재와 같은 분담비율로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표10> 유류분 반환 분담비율

반환의무자	유류분 초과액(F)	분담비율[F/(F ₁ +F ₂ +F ₃)]
원고 B	3,715,032	0.003501
피고 D	450,093,502	0.424181
피고 E	607,278,000	0.572317

다) 위 각 분담비율에 따라 원고 A, C에 대한 피고들의 각 유류분 반환가액을 구하면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피고들의 반환가액

피고	원고	반환가액
피고 D	원고 A	76,381,617(= 원고 A의 유류분 부족액 180,068,455 × 피고 D의 분담비율 0.424181)
	원고 C	37,165,656(= 원고 C의 유류분 부족액 87,617,447 × 피고 D의 분담비율 0.424181)
피고 E	원고 A	103,056,237(= 원고 A의 유류분 부족액 180,068,455 × 피고 E의 분담비율 0.572317)
	원고 C	50,144,954(= 원고 C의 유류분 부족액 87,617,447 × 피고 E의 분담비율 0.572317)

라) 한편 피고 D은 G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외에도 대출금 일부 변제를 위한 금전을 증여받았으므로, 원고 A, C에게 유류분을 반환함에 있어 각 수증재산에서 그 가액 비율에 따라 유류분 반환의무를 부담한다. 피고 D의 유류분 반환액을 각 재산의 비율에 따라 계산하면 아래 <표12>와 같다.

<표12> 피고 D의 수증재산별 분담액

반환 상대방	수증재산	분담액
원고 A	이 사건 부동산	74,855,103 [= 원고 A에게 반환할 유류분 76,381,617 × 피고 D이 증여받은 이 사건 부동산 가액 607,278,000 / 수증재산 합계 619,662,168(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 607,278,000 및 금전 12,384,168)]
	금전	1,526,514 (= 76,381,617 × 12,384,168/619,662,168)
원고 C	이 사건 부동산	36,422,887 (= 원고 C에게 반환할 유류분 37,165,656 × 607,278,000/619,662,168)
	금전	742,769 (= 37,165,656 × 12,384,168/619,662,168)

마) 결국 피고 D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A에게 그 가액이 74,855,103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원고 C에게 그 가액이 36,422,887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피고 E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A에게 그

가액이 103,056,237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원고 C에게 그 가액이 50,144,954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이 1,214,556,000원이므로, 피고 D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A에게 74,855,103/1,214,556,000 지분에 관하여, 원고 C에게 36,422,887/1,214,556,000 지분에 관하여, 피고 E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A에게 103,056,237/1,214,556,000 지분에 관하여, 원고 C에게 50,144,954/1,214,556,000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인 2019. 8. 14.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원고 A, C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며, 원고 A, C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예비적 청구와 원고 B의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원석, 판사 구세희, 판사 김부성

부동산 목록

1. 서울특별시 관악구 대 160.9㎡
2.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층래브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주택
지하1층 111.06㎡ 철로
1층 79.92㎡ 소매점
2층 79.92㎡ 주택
3층 79.92㎡ 주택

